

고성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110
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:2001. 9. 24.

제 출 자: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2001. 7월부터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문화재 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, 종토세 경감내용 신설(안 제9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관련공문 : 도 세정 13400 - 11107호 시군세 감면조례개정 표준안
- 입법예고 : 고성군 공고제2001 - 303호(결과, 의견내용 없음)

4. 본문 : 붙임참조.

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목 “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” 을 “문화재에 대한 감면” 으로 하고
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%를 경감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,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·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.</p> <p>1.~3.(생략)</p> <p>< 신 설 ></p>	<p>제9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3.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%를 경감한다.</p>